

은 공포한 날로부터施行하도록 附則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瑞草區 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의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를 說明드렸습니다만 細部的인 内容은 나눠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같으로 本 條例案은 各 區 共通事項임을 아울러 報告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 서울特別市瑞草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

提出年月日 : 1992. 4.14.

提 出 者 : 瑞草區廳長

##### 1. 提案理由

○交通事故 줄이기 綜合對策의 一還으로 서울特別市 瑞草區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함.

##### 2. 主要骨子

○委員會構成 - 委員長包含15人以內로 構成  
 • 委員長 : 副區廳長  
 • 副委員長 : 都市整備局長  
 • 委員 : 13人 以內  
     └ 公務員(7名)  
     └ 民間人(6名)  
 • 幹 事 : 地域交通課 地域交通係長

##### ○委員會 機能

•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審議 議決  
 • “交通事故 줄이기” 推進實績 評價 및 效率의 推進方案 講究  
 • 委員長 및 委員이 提出하는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 ○運營

• 委員會 運營은 地域交通課에서 主管  
 • 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게는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 支給

##### ○會 議

• 定期會議 : 每年 1회  
 • 臨時會議 :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3. 條例內容 : 別添

#### 서울特別市瑞草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設置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 瑞草區 交通安全對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設置・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自治區 交通安全 細部施行計劃樹立
2. 委員長 및 委員이 提出하는 交通安全에 관한 事項
3. 其他 法令에 의하여 부의하는 事項

第3條(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各 1人을 包含하여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瑞草區 副區廳長(以下 “副區廳長”이라 한다)이 되고 副委員長은 都市整備局長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號의 자가 된다.

1. 企劃豫算課長
2. 地域交通課長
3. 都市整備課長
4. 建設管理課長
5. 土木課長
6. 瑞草警察署 交通課長
7. 方背警察署 交通課長
8. 區廳長이 交通安全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자 및 交通有關團體의 장 중에서 委嘱한 者

第4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轄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 定期會議는 每年 1회 開催하고 臨時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수시로 召集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④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⑤ 審議事項이 경미하거나 委員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書面 審議로 會議에 갈음할 수 있다.

第6條(幹事와 書記)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과 書記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地域交通課 地域交通係長이 되고 書記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交通安全業務 擔當 公務員이 된다.

第7條(資料의 提出등) 委員長은 管內 交通安全 有關機關과 團體 및 其他 關係人에 대하여 交通安全 業務 遂行上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第8條(手當支給) 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게는 豫算의 範圍내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9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委員長 林漢鍾 都市整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께서 檢討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輝男 專門委員 李輝男입니다. 먼저 이 條例의 制定 事由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發議하신 局長님의 說明과 같이 過去에 瑞草區에는 없었던 이 條例를 새로이 制定하는 理由는 交通事故를 줄이기 위해서는 交通環境을 造成하고 交通安全意識을 涵養하는 委員會 組織을 単位 行政機關에 設置해서 運營할 必要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理解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條例의 制定 根據하고 條例案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기 전에 委員님들께서는 檢討 報告書 2페이지를 잠시 펼쳐 봐 주시면 합니다.

2페이지에 關聯法規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條例와 關聯된 法規를 간단하게 說明을 드리는 것이 本案 審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이 되어서 간단하게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安全法 第4條에 보시면 地方自治團體

는 政府施策에 隨해서 그 管轄區域內에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을 당해 區域의 實情에 맞게 樹立하고 이를 實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밑의 條文을 전부 說明을 해보면 廣域地方自治團體에 局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基礎自治團體에는 該當이 안되는 그런 條文들이 되겠습니다.

그 内容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를 두고 市에서는 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委員長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條에 보면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交通安全細部施行計劃을 作成해야 되고 그 作成한 다음에는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 즉, 國務總理가 委員長으로 되는 그 機構에 하고 그 다음에 地方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條文에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瑞草區에 이 같은 機構를 만든다 하더라도 報告하는데는 없습니다. 그 委員會가 審議하고 議決한 것을 廣域自治團體의 長이 國務總理와 地方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듯이 報告하는 일은 없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参考로 地方行政機關이라는 것을 說明을 드리면 交通安全法施行令에서 內務部, 財務部, 教育部, 農林水產部 등 해서 公報處 그렇게 해서 11개 部處하고 國務總理가 交通安全 政策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制定하는 機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報告하는 對象은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에서 報告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11개 部處外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條를 보시면 거기에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을 參考로 말씀드리면 建設部의 地方國土管理廳이라든지 環境處의 各 支廳이라든지 商工部의 輸出自由地城管理所라든지 하는 實質上 全國을 상대로 한 中央行政機關의 特別地方行政機關이 되겠습니다.